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서관법」의 일부 개정(2016.2.3.)에 따라 공공도서관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 1)
- 공공도서관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 ② 도서관의 장은 도서를 기증한 사람에게 예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도서관업무를 관할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담당관장,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운영위원회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고, 서기는 도서관 직원중에서 정한다.

제33조제4항중 “제12조부터”를 제13조부터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조의1(도서의 기증) 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도서관의 장은 도서를 기증한 사람에게 예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구성) ①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담당관장,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장은 도서관업무를 관할하는 부시장으로 하고,</u> ----- ----- ----- ----- ----- -----.
제31조(설치 및 구성) ①~⑤ (생략) ⑥ <신 설>	제31조(설치 및 구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위원회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고, 서기는 도서관 직원중에서 정한다.
제33조(회의 등) ①~③ (생략)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회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3조부터 ----- -----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구월동)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남구 경인로 218(도화동)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중구 영종대로 85(운서동)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중구 답동로24번길 17(율목동)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	서구 크리스탈로 59(경서동)	
인천광역시 영종하늘도서관	중구 하늘중앙로 132(중산동)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서관	서구 답지로 24(연희동)	
인천광역시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송도동)	
인천광역시 주안도서관	남구 구월남로 27(주안4동)	
인천광역시 연수도서관	연수구 함박피로 152번길 96(연수3동)	
인천광역시 계양도서관	계양구 계양산로 134번길 18(계산동)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서관법 - 제9조(금전 등의 기부) -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도서관법

제9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4.5.>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2.3.>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16.8.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2016.2.3.)에 따른 일부 관련 조문 개정과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사람에게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출예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재익